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윤소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21.

발 의 자 : 윤소하·추혜선·이정미  
심상정·김종대·윤후덕  
금태섭·남인순·김상희  
박주현·정춘숙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로, 정부 지침으로 2008년 시행된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.

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의무적 인증 대상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정되어 인증을 받은 전체 대상시설 중 민간 대상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인증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

또한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시 장애인 위원 및 그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인증제도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고,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관련 통계작성 등에 관한 법

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인증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인증 의무 대상시설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,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,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·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비인증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, 이를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, 제27조제1항 신설).
- 나. 보건복지부에 두는 인증위원회와 인증기관에 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, 인증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시각·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100분의 30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(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10조의8 신설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하고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

하는 한편,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도록 함(안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 신설).

##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제10조의5,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”을 “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까지에”를 “제5항까지에”로, “지정 기준·절차”를 “지정 기준·절차,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·운영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시설주는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(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·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
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로서 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상시설별로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조경·토목·건축·장애인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각·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되, 위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제10조의5제2호 중 “제10조의2제5항”을 “제10조의2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제10조의2제5항”을 각각 “제10조의2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8(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정한다.

③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, 조경·토목·건축·장애인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각·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④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9(인증의 사후관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이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·관리 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,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10(인증 통계의 작성·관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9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①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이 조, 제10조의5,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“보건복지부장관등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“인증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</p>	<p>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① ----- -----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시설주는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(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)을</p>



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④ (생략)  
<신설>

받아야 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·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
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상시설별로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조경·토목·건축·장애인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각·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되, 위원 중 100분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·절차, 인증기관 지정 기준·절차, 인증 비용의 부담,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(이하 “공동부령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5(인증의 취소)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제10조의6(인증기관 지정의 취소)

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
의 3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⑥ -----제5항까지에-----

지정 기준·절차,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·운영-----

---

제10조의5(인증의 취소)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10조의2제6항-----

제10조의6(인증기관 지정의 취소)

① -----

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
- 3.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4. 5. (생략)
- ② (생략)
- 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제10조의2제6항-----  
-----  
-----
- 3. 제10조의2제6항-----  
-----  
-----
- 4. 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8(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1.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

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정한다.

③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, 조정·토목·건축·장애인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각·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④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0조의9(인증의 사후관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

<신 설>

제27조(과태료) <신 설>

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,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10(인증 통계의 작성·관리)

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9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27조(과태료) ① 제10조의2제3

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

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·징수하며,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)</p> <p>⑤ -----<u>제4항</u>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
---	--